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2호,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1조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 포장업의 영업자

제18조의2제1항 중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3호의2 중 “영업”을 “영업. 이 경우 자신이 직접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달걀을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1조제5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한 축산물을 우유류판매업자가 배

송하기 위해 보관하는 경우

제21조제7호가목1) 중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슈퍼마켓등 점포 경영자”라 한다)”를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춘 점포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식품 점포 경영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1) 중 “「축산법」 제22조제3항”을 “「축산법」 제22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포장된 달걀[제12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영업자가 제12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포장한 달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슈퍼마켓등”을 “포장된 달걀을 식품”으로 하고, 같은 목 4)와 5) 중 “식용란수집판매업”을 각각 “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하며,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 단서 중 “슈퍼마켓등 점포경영자”를 “식품 점포 경영자”로 한다.

6)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집하여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식용란을 판매하는 경우

별표 3의2 포상금 지급대상자란 제1호 중 “법 제4조제5항”을 “법 제4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의 영업자	100	200	300
-------------	-----	-----	-----

별표 4 제2호차2)부터 5)까지를 각각 3)부터 6)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200	350	500
------------------	--	-----	-----	-----

별표 4 제2호차목5)(중전의 차목4)) 중 “제12조의7제2항제4호”를 “제12조의7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6)(중전의 차목5)) 중 “제12조의7제2항제5호”을 “제12조의7제2항제6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카목 및 같은목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호의3			
2)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대한 지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별표 4 제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3호	50	100	150
---------------------------------	---------------	----	-----	-----

별표 4 제2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1호의2			
----------------------------	-----------------	--	--	--

별표 4 제2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법 제30조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수의사를 그 검사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1호			
---	---------------	--	--	--

별표 4 제2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법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营业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2호	20	40	60
--	---------------	----	----	----

별표 4 제2호어목 및 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어. 법 제31조의4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0호의2	50	100	150
저. 법 제3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0호의3	50	100	150

별표 4 제2호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커. 법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0호의4			
--	------------------	--	--	--

별표 4 제2호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터.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3호	30	60	90
--	---------------	----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① (생략)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식용란 중 달걀의 경우 제4호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② ----- ----- ----- ----- -. ----- -- 제2호, 제5호 및 제6호-- -. 1. (현행과 같음)
1. (생략) <신설>	2. 제21조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 포장업의 영업자
2. ~ 5. (생략)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① 별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검사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① 별 제14조제1항-----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 원이 되려는 사람: 24시간 이 상	<삭 제>
3.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 매년 4시간 이상	3. 법 제14조제1항-----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 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 포장하는 <u>영업</u>	3의2. ----- ----- ----- <u>영업. 이</u> <u>경우 자신이 직접 선별·세</u> <u>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u> <u>달걀을 판매하는 것을 포</u> <u>합한다.</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 다만, <u>축산물가공업 또는</u> <u>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u> <u>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u>	5. ----- ----- ----- . 다만, 다음 <u>각목의 경우는 제외 한다.</u> <u>가. 축산물가공업 또는</u> <u>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u>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한 축산물을 우유류판매업자가 배송하기 위해 보관하는 경우	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가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같다)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6. (생략)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营业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u>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슈퍼마켓등 점포 경영자”라 한다)</u> 또는 식육판매업 외의 축산물 판매업 영업자가 닭·오리의 식육(제12조의7제2	6. (현행과 같음) 7. ----- ----- 가. ----- ----- ----- ----- ----- ----- ----- ----- ----- 1) <u>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춘 점포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식품 점포 경영자”라 한다)</u> ----- ----- -----	2) ~ 5) (생략) 나. ~ 마. (생략) 바.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산법」 제22조제3항	2) ~ 5) (현행과 같음) 나. ~ 마. (현행과 같음) 바. ----- ----- ----- ----- ----- ----- ----- ----- ----- 1) 「축산법」 제22조제5항

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등	-----
록을 하지 아니하고 닭	-----
사육업을 하는 경우	-----
2) 포장된 달걀[제12조의7제2	2) 포장된 달걀을 식품 ---
항제4호에 따른 축산물판매	-----
업(식용란수집판매업만 해당	-----
한다)의 영업자가 제12조	-----
의7제1항제2호에 따라 포	-----
장한 달걀을 말한다. 이하	-----
이 목에서 같다]을 슈퍼마	-----
켓등 점포 경영자, 식용란	-----
수집판매업 외의 축산물판	-----
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	-----
가공업의 영업자가 해당	-----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	-----
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
하는 경우(전화 또는 홈페이	-----
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
배송·판매하는 경우를	-----
포함한다)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4) -----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	---- 식용란선별포장업
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는 경우	----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5) -----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

물」 제2조제3호에 따른	-----
통신판매업자가 달걀을	-----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
보관·관리 또는 배송을	-----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	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로 한정한다)	-----
<신 설>	6)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자가 자신이 직접 수집하
	여 선별·세척·건조·살
	균·검란·포장한 식용란
	을 판매하는 경우
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 또	8. -----
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	-----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	-----
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	-----
· 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	-----
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다	-----
만, 슈퍼마켓등 점포 경영자가	-- 식품 점포 경영자 -----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	-----
을 해당 점포에 있는 냉장시	-----
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및	-----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	-----
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에	-----
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전	-----

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
주문을 받아 배송·판매하는	-----
경우를 포함한다)하면서 식육	-----
가공품(통조림·병조림은 제	-----
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	-----
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3) 719 - 3259